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 I. 체당금 상한액 고시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체당금(일반 체당금)

(단위: 만원)

항 목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퇴직급여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310				

※ 비고: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

(단위: 만원)

항 목	상한액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
퇴직급여등	700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 II. 행정사항

###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한 상한액 적용

개정된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한 체당금 상한액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